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고양시)

□ 민원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 부당

□ 신청 원인

- 2025년 9월 21일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신청인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0월 2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사전납부에 따른 감경 안내를 등기를 통해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10월 23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함.
- 신청인은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 11월 18일에 우편함에 배송된 일반우편을 보고 단속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 과태료처분 사전납부 기간은 11월 11일까지로서 신청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간이 경과하여 감경받을 기회를 받지 못하였음
- 이에 신청인은 사전통지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과태료 자진납부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해당 과태료를 재부과하여 하여 감경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재처분해줄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해당 단속 건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절차에 맞게 따라 모두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5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완료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 됨,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사전통지서 발송 내역
 - 등기 우편 : 2025. 10. 02. 발송 → 배달 결과 폐문부재
 - 일반 우편 : 2025. 10. 23. 발송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 : 2025. 10. 30. (공고기간 : 2025. 10. 30. ~ 11. 20.)

□ 사실관계

- 2025. 9. 21. : 신청인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 2025. 10. 2.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안내 등기 발송
※ 사전납부기간 11. 11.까지
- 2025. 10. 21. : 등기우편 폐문부재 반송
- 2025. 10. 23. : 일반우편 재발송
- 2025. 10. 30.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기간 10. 30. ~ 11.20.)
- 2025. 11. 18. : 신청인 단속사실 인지, 유선상 질의
- 2025. 11. 28.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접수

□ 판단 및 결론

가. 결론

- 신청인의 청구내용에 이유가 있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도록 재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함.

나. 판단

-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 등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 일반우편을 재발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과 다르게 피신청인 일산동구 교통행정과는 사전통지가 반송된 이후 10월 30일 공시송달 공고를 시행하였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14일이 지난때인 11월 13일 효력이 발생하였음.
- 사전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11월 13일 이후인 11월 18일에 신청인 본인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지하게되어 피신청인에게 유선상 질의를 하고 의견을 밝혔음. 하지만 피신청인은 최초 사전통

지(등기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어 도달하지 못한 통지)에 밝힌 11월 11일까지가 사전납부 기간이었으며 연장은 불가능하여 본처분이 부과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한편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즉, 사전통지 효력발생일인 11월 13일부터 10일 이내인 11월 23일까지는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신청인이 사전납부를 하고자 한다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변경 또는 재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채 본처분이 이루어진 본 청구 건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태료 처분을 재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함

☐ **부서 수용 여부 :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재처분함.**